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9.(목) 배포 2026. 1. 29.(목)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 1. 29.「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창작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 구축 기대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기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시행할 수 있었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였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의무,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를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및 사업자 책임 강화, 연간 추산 1천억 원이 넘는 암표 시장에 타격 기대

이번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실제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통구조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여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없이는 암표 거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하였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의 내부자·이용자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

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공연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영진 (044-203-2471)
		담당자	서기관	김용수 (044-203-2476)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보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491)
		담당자	사무관	황현동 (044-203-2492)
		담당자	사무관	유미현 (044-203-2091)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강은영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안소영 (044-203-2732)
담당 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이재순 (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박효필 (044-203-31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9. (생 략)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생 략) 31. ~ 3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29. (현행과 같음) 30. ----------. 가.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현행과 같음) 31. ~ 36. (현행과 같음)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30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신 설>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 ①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

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정하는----------.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④ (생 략)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⑦ ----------제4항----------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2. (생 략)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 ⑧ (생 략)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신 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 ---------- ---------- ---------- ---------- ---------- ---------- ----------.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제137조(벌칙)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

	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항·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붙임2 **「공연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판매일시, 구매·판매가격, 구매·판매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 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

	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

	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

	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생 략) <신 설>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 략) <신 설>	제41조(벌칙) ---------- ---------- ---------- ----------. 1. 제4조의2제1항을---------- 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 ④·⑤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붙임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

		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판매일시, 구매·판매가격, 구매·판매수량 등)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등)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등)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신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벌칙) ----------.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3(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한 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신고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생략) <신 설>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